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시)
-----------	-----------------------

(2013년 4월 25일)
(상하이 aT)

구분	핵심 내용
I 통관	<input type="checkbox"/> 상해시 영업관리국 '식용소금' 전매추진 <input type="checkbox"/> <u>상해에서 유통·소비되는 수입산 식용소금을 전매관리</u> - (기존) 일반무역상도 영업관리국의 비준(허가)을 받아 수입판매 - (변경) 영업관리국에서 식용소금을 일괄수입 및 판매추진

항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2. 품목의 통관/검역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소금은 전매품이며, 상해에서는 '상해시 영업관리국'이 관리하고 있음 ○ 공업용 소금은 누구나 수입, 판매가 가능하나 식용소금의 경우 상해시 영업관리국의 독점 관리 사업임 ○ 현재까지는 영업관리국 직접수입과 일반 무역상에게 소금수입·판매권 비준을 통한 관리를 병행하였으나 편법수입 및 유통혼란 등으로 향후('13년 5~6월중)에는 상해에서 유통·판매되는 소금의 경우 상해시 영업관리국에서 일괄 수입 및 판매예정 ○ 현재 상해시 영업관리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소금은 미국산이며, 한국산에 이어 일본산도 직수입 예정 <input type="checkbox"/> 상해유통 수입산 식용소금 일괄단속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 상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식용소금을 상해시 영업관리국에서 일제 단속 예정 * 소금전매 관련규정은 번역본 참조(첨부 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시사점 / 대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소금 수출업체(바이어)에 관련 내용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소금'은 전매품목으로 기존에는 영업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바이어가 정상 수입 및 유통판매가 가능하였으나, 상해시 영업관리국 전매관리 추진으로 기존 바이어를 통한 수출을 중단하고 영업관리국에 직수출 경로 구축 필요 ⇒ 상기조치는 상해시에 국한된 것으로 기타지역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식용 소금은 해당사항이 없음 ○ 상해유통 식용소금 희망업체는 직수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시에 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소금 수출업체는 상해시 영업관리국에 직수출 필요 <input type="checkbox"/> 발표일자/ 출처 : '13.4.22 상해시 영업관리국 담당자 면담

식용소금 전매방법

(국무원령 제197호)

제1장 총칙

제1조 식용소금의 관리 강화, 식용소금에 요오드 첨가를 효율적인 실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은 식용소금에 대하여 전매를 실시한다. 본 방법 중 식용소금이라는 것은 직접 식용 혹은 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을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소금의 생산, 저장운송 및 판매에 적용한다.

제4조 국무원이 수권하는 영업주관기관(이하 ‘국무원영업주관기관’)은 전국 식용소금의 전매를 관리한다. 현금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수권하는 영업주관기관(이하 ‘현금’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주관기관) 해당 행정지역 내 식용소금의 전매를 관리한다.

제2장 식용소금 생산

제5조 중국은 식용소금에 대하여 지정생산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생산업체가 아닌 경우, 식용소금을 생산하면 안 된다. 지정소금생산업체가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업주관기관은 추천하여 국무원영업주관기관으로 심사하여 비준한다.

제6조 국무원영업주관기관은 식용소금 자원 상황 및 국가 사정하는 식용소금 생산량에 따라 합리적인 배치,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로 식용소금 지정생산업체를 확정한다.

제7조 중국은 식용소금 생산에 대하여 계획 관리를 실시한다. 식용소금 연도 생산계획이 국무원 계획행정주관기관으로 지령을 내리며 국무원 영업주관기관으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8조 우물물을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면 안 된다.

제3장 식용소금 판매

제9조 중국은 식용소금 배정에 지령적 계획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계획행정주관기관이 식용소금 연도 배정계획을 내리며 국무원영업주관기관으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중국은 식용소금 도매에 도매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식용소금 도매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식용소금도매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식용소금도매허가증 없는 경우, 식용소금 도매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영업주관기관은 심사하여 식용소금 도매 업체에 식용소금 도매허가증을 발급하며 국무원영업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국무원영업주관기관은 통일적으로 식용소금허가증을 제작한다.

제12조 식용소금도매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 (1) 업체 경영규모와 비슷한 등기자본이 있다.
- (2)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다.
- (3) 국가 규정에 부합한 저장시설이 있다.
- (4) 해당 지역 식용소금 도매업체 합리적인 배치 요구에 부합하다.

제13조 식용소금도매업체가 국가 계획에 따라 식용소금을 구입하여 규정하는 판매범위에서 식용소금을 판매한다.

제14조 식용소금 소매상 및 대리 판매하는 자영업자, 대리구매점, 대리판매점 및 소금으로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는 해당지역에 식용소금도매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식용소금을 구입해야 한다.

제15조 식용소금 지정생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대리 판매하는 자영업자, 대리구매점, 대리 판매점은 국가가 규정한 식용소금 가격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아래와 같은 제품을 식용소금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

- (1) 액상염(천연 간수 함유함)
- (2) 공업용 소금, 농업용 소금
- (3) 우물물로 만드는 소금 제품
- (4) 국가식용소금기준 혹은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금제품
- (5) 기타 비식용 소금제품

제4장 식용소금의 저장 및 운송

제17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염업주관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식용소금 지정생산업체와 식용소금도매업체의 합리적인 재고량을 확정하며 국무원염업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식용소금지정업체 및 식용소금도매업체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염업주관기관의 요구대로 합리적인 식용소금재고량을 유지해야 한다.

제18조 식용소금을 위탁 운송 혹은 자가 운송하는 업체 및 개인은 국무원염업주관기관 혹은 그 수권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염업주관기관 발급한 식용소금운송허가증(食盐准运证) 있어야 한다. 식용소금을 국가중점운송물자로서 운송업체가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9조 본 방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하는 비지정 식용소금 생산업체가 식용소금을 생산하는 경우, 주관하는 기관은 해당 업체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 불법 생산하는 소금 및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하며 불법으로 생산하는 식용소금 가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20조 본 방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우물물로 식용소금을 만드는 경우, 주관하는 기관은 해당 업체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 불법으로 생산하는 소금제품, 부당이득 및 생산도구를 몰수해야 하며 불법으로 생산하는 식용소금 가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 본 방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소금도매허가증 없는 업체가 식용소금도매를 경영하는 경우, 주관하는 기관은 해당 업체 도매를 금지해야 한다. 불법으로 경영하는 식용소금 및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하며 불법으로 경영하는 식용소금 가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본 방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소금 소매상, 대리 판매 자영업자, 대리구매점, 대리판매점 및 소금으로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는 식용소금도매허가증이 없는 업체 혹은 개인에서 식용소금을 구매하는 경우, 염업주관기관은 해당 업체가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법으로 구매하는 식용소금을 몰수하며 불법으로 구매한 식용소금의 가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제23조 본 방법 제16조 (1), (2), (3), (5) 규정을 위반하여, 비식용소금을 식용소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영업주관기관은 판매 금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하며 부당이득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 제24조 본 방법 제16조 (4)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소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금제품을 식용소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기준화법> 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25조 본 방법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소금운송허가증 없이 위탁운송 혹은 스스로 운송하는 경우, 영업주관기관은 불법으로 운송하는 식용소금을 몰수하며 하주에게 불법으로 운송하는 식용소금의 가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계약운송업자에게 부당이득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제26조 영업주관기관 관련 인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한다.

제6장 부칙

- 제27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 식용소금도매에 종사하는 업체가 본 방법 제12조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주관기관 심사하여 해당 업체에게 식용소금도매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28조 어업, 축산용 소금은 본 방법이 적용된다.
- 제29조 본 방법은 발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6년 5월 27일